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. 8. 13 선고 2019가단197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결 2019. 7. 16

판 결선고 2019. 8. 13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, & 경남 하동군 C 대 413㎡ 중,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거) 부분 4㎡ 지상 경량철골구조 강판지붕 단층 축사 및 같은도면 표시 4, 5, 6, 7,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匕) 부분 26㎡ 지상 경량철골구조 강판지붕 단층 창고를 각 철거하고, 敏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, © 2009. 3.28.부터 위 각 토지 부분의 철거 및 인도완료시까지 월 20,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지 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토지의 소유관계

(1)원고는 1984. 2. 6. 경남 하동군 C 대 413㎡(이하 '원고 토지'라고 한다)를 매 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.(2)피고는 1973. 7. 10. 위 토지에 인접한 D 대 489㎡(이하 '피고 토지'라고 한다)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, 2005. 3. 28. 위 토지상에 경량철골구조 창고 107.43㎡(이하 '이 사건 창고'라고 한다)와 같은 구조 축사 50.91㎡(이하 '이 사건 축사'라고 한다)를 신축하였는데, 위 축사가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(기) 부분을, 위 창고가 같은 도면 표시 (L) 부분을 각각 침범하고 있다.

나. 토지사용승낙서의 작성

한편 원고는 위 창고 및 축사의 신축 무렵 피고에게 *원고 토지 침범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, 앞으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'라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(이하 '이 사건 승낙서'라고 한다)를 작성해 주면서, 위 승낙서에 인감증명서(2005. 3. 25.자)까지 첨부하였다. [인정근거] : 다툼 없는 사실, 갑제1내지 3호증, 을제1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측량감정축탁 결과, 변론의 전취지]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일음 원고에게 원고 토지 중 이 사건 축사 및 창고가 침범한 부분을 철거한 후 그 토지를 인도하고, 인도시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이에 대하여 피고는 '이 사건 축사 및 창고 건축 당시 원고로부터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을 얻었다'고 주장하므로 보건대, 이 사건 승낙서에는 원고가 '원고 토지 침범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, 앞으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'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, 위 승낙서에는 원고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보았고, 위 인정사실에, 이 사건 축사 및 창고의 건축일과 위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거의 일치하는 점,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는

토지사용을승낙하였다고 자인하는 점,이후 원고가 오랜 기간 피고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, 위 승낙서의 '아무런 이의*란 철거, 인도 청구는 물론이고 임료를 청구하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, 원고는 위 승낙서 작성 당시 피고에게 원고 토지에 대한 경계침범 행위를 조건 없이 승낙함으로써그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,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.

3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김도균

별지